

	고속련일학습병행(P-TECH) 사업 운영 지침		규정번호	6-3-27
			제정일자	2020.03.01
	개정일자	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계약학과 운영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고속련일학습병행(P-TECH) 사업(이하 “P-TECH” 라 한다)의 기본계획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P-TECH 사업단) 동양미래대학교는 산학협력단 내에 P-TECH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P-TECH 사업단을 둔다.

제3조(사업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동훈련센터장으로 한다.

1. 학습기업 대표자 : 2명 이상
 2. 지방자치단체 관계자,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문가, 관할 교육청 공무원, 사업주단체 대표자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3. 본 대학 P-TECH 사업 참여 학과 교수 또는 관련 학과 교수
- ③ 운영위원은 본 대학 P-TECH 사업 참여 학과 교수 또는 관련 학과 교수 중에 공동훈련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외부위원은 공동훈련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공동훈련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⑤ 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외부위원 중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P-TECH 사업 관련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.
- ⑦ 사업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단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운영위원회 기능)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심의
2. 예산변경 및 기자재 도입 심의
3. P-TECH 사업 운영 규정 개정 심의
4.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
5.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5조(사업기간) ①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

인력공단의 「일학습병행 운영규칙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비의 사용 및 결산) ① 사업비의 예·결산은 사업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한다.
② 본 사업의 회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「고숙련일학습병행(P-TECH) 공동훈련센터 정부지원금 지원 및 집행 기준」에 따른다.

제7조(준용) ①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약학과는 기관이 정한 규정과 지침을 본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